

---

활동가와 함께 하는 인권토론회

---

## 성폭력 실태와

##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6년 3월 27일 (월) 15:00~17:00
- 장소 : 광주 YWCA 6층 회의실
-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 주최 : 광주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광주YWCA성폭력상담소,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

## 글 나오는 순서

---

### <발제1> [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

임선숙 (여성민우회회장, 변호사)

|                                   |    |
|-----------------------------------|----|
| 1. 발제의 목적 .....                   | 1  |
| 2. 토론의 전체 .....                   | 1  |
| 3.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              | 3  |
| 가. 법률의 한계 .....                   | 3  |
|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            | 9  |
| 4. 보완책 .....                      | 13 |
| 가. 친고죄의 폐지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   | 13 |
|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   | 14 |
|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             | 14 |
|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             | 15 |
| 마. 피해자 보호규정 .....                 | 16 |
|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       | 17 |
|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   | 17 |
|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      | 18 |
|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           | 19 |
| 5. 결론 .....                       | 20 |
| □ 참고자료 :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 | 21 |

### <발제2> [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등 ]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장)

|                                  |    |
|----------------------------------|----|
| 1.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           | 25 |
| 2. 성희롱 관련법규 .....                | 26 |
| 3. 성희롱 관련법 비교 .....              | 27 |
| 4. 성희롱 관련 판례 .....               | 28 |
| 5. 성희롱 판단시 고려사항 .....            | 29 |
| 6. 성희롱 상담시 고려사항 .....            | 29 |
| □ 참고 1 : 성차별·성희롱 관련 조항 .....     | 31 |
| □ 참고 2 :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 ..... | 33 |

## 〈사례 및 쟁점1〉 [ 호남지역 아동 성폭력 실태 ]

신기숙(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                              |    |
|------------------------------|----|
| ○ 성폭력 특별법 제정 .....           | 34 |
| ○ 성폭력의 개념 .....              | 35 |
| ○ 유형 및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  | 36 |
| ○ 개정 성폭력특별법, 성폭력 관련 쟁점 ..... | 37 |
|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필요성 .....     | 38 |

## 〈사례 및 쟁점2〉 [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정미혜(광주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               |    |
|---------------|----|
| 1. 상담통계 ..... | 50 |
| 2. 사례 .....   | 50 |
| 3. 개선방안 ..... | 57 |

## 〈사례 및 쟁점3-1〉 [ 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    |
|----------------------------|----|
| I. 여는 말 .....              | 58 |
| II.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현황 ..... | 59 |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분석 ..... | 59 |
|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석 .....  | 60 |
| III. 결론 및 제언 .....         | 61 |

## 〈사례 및 쟁점3-2〉 [발기부전 남성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가능한가?]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    |
|------------------------------------|----|
| 1. 인지경로 .....                      | 62 |
| 2. 피해자 상황 .....                    | 62 |
| 3. 가해자 상황 .....                    | 63 |
| 4. 피해상황 .....                      | 63 |
| 5. 지원과정 .....                      | 64 |
| 6.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               | 64 |
| 7.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현황 .....             | 65 |
| □ 참고자료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웹터 주소록 ..... | 66 |

#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임선숙 (여성민우회회장, 변호사)

## 1. 발제의 목적

200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성폭력피해자구조사업을 실시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아동, 농아자, 정신지체자가 피해자인 사건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사건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성폭력구조사업에 참여한 변호사들 중심으로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경험을 나누면서 제기된 고민들을 한차례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있었다. 또한 성폭력상담기관이나 피해자보호시설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상담 사례를 나누고 현행법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이 지역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조활동이 전개되어 왔으므로, 이들 경험을 나누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할 것이다.

본 발제는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토론을 위한 것이다.

## 2. 토론의 전제

-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해의 전제로서 성인지적 관점의 확립의 필요성

성폭력피해자를 만나거나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성인지적관점에서 성폭력사건을 보거나 피해자를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흔히 언급되는 정책입안에 있어서의 성인지적 관점이란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등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경험, 실제적인 요구를 분석해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

을 뜻한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 여성의 다른 요구를 반영하며,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분리 및 고정관념의 개입여부를 검토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를 성폭력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사실을 파악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혹은 들추어내는 사실), 당사자의 반응이나 태도, 사건의 전망과 결과에 대한 판단 등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남성위주의 지배적 힘의 구조하에서 남성적 시각으로 이해되고 평가되고,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구조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또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률이 남성적 관점, 남성의 이미지, 남성의 경험 등으로 가득차 있고, 법규범으로 채택된 내용마저도 남성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과 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주체-경찰, 검사, 법관-들 또한 남성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성폭력사건이 남성적 시각에서 처리되면서 피해자에게는 제2의 피해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간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안으로 삽입되어야 강간으로 본다는 대목은 성에 대한 정의가 남성을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구조의 차이를 ‘데이트강간’을 통해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이 쾌팅을 하면 성교까지 허용한다고 이해하고, 여성이 여관이나 은밀한 곳까지 오면 성교를 허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관점이 수동적, 창녀와 성녀의 이분법, 의사와 표현의 불일치(여성의 ‘노’는 ‘예스’)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데이트강간사건에서 가해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도 그 여성이 자신에게 몸을 허락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 피해여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동의했는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여성이 동의했는가에 대하여 남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또한 피해자가 저항했는가를 판단할 때에도 결정적 것은 강간 이외의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이 남성에 대해서 행사한 물리력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남성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조차 남성적 시각으로 해석되는 것은 어느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성폭력이라는 것이 여성

의 관점에서 동의없는 성관계여야 한다면 여성적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여성, 피해사실에 대한 이해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3. 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 가. 법률의 한계

이하에서는 주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친고죄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정의함에 있어 형법의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서 새롭게 규정된 범죄 유형 이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광범위하게 친고죄가 인정되고 있다.

형법이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것인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취급하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친고죄 규정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와 달리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선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며,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하다. 고소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끊임없이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시달려야 하며,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취하 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

즉 친고죄 규정은 그 취지와 정반대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의 의사여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부담을 주며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에서 벗어

---

날 여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2) 강간의 객체

형법 제297조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된 것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간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해자인 부녀자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 사회 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97조는 헌법 제9조에 위반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물론 대법원의 해석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한다면, 남성에게 있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남성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가 가능한데도, 이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원은 음경과 고환을 제거하고 그곳에 질을 만들어 넣는 방법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아 유방이 발달하는 등 여성적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 쾌감까지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는 어릴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왔고, 위의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내외부성기의 특징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으로서의 성격도 대부분 상실하여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의 구조, 정상적인 남자로서 생활한 기간, 성전환수술을 한 경위, 시기 및 수술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의 판단기준

은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본래의 내외부 성기 구조, 생식능력”등임을 명시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

이처럼 강간죄의 객체를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인 성역할, 본인이 느끼는 성적체성이 아닌 생식기의 내부구조와 생식능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는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비동의 간음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간음에 대하여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은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 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意的인 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교는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고,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데이트 강간”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비동의간음을 처벌할 경우 “남성들의 성교추구행위가 언제든 범죄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폭행, 협박이 사용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그렇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구별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도 형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부장주의의 관념의 산물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물론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까지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근거로 가해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범죄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곁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치심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기를 포기하고, 성폭력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남성이 이를 “소극적인 동의”로 받아들여 강압적으로 성교를 시도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면 중에 정확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간음을 당하는 사례들이 현

---

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강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강간을 원한다”거나, “여성의 거절의사는 사실상 동의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이른바 강간신화가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여성들의 경우 성적인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태도가 “정숙하지 못하거나” “성을 밝히는 여성”으로 매도당할 위험이 있어 성적인 의사표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성폭력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거나 교체중인 남성이 성교를 시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의 동기를 의심받고 심지어는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4) 성희롱

성폭력특별법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성희롱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규제 근거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법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피해 여성들은 성희롱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실에서 성희롱의 행위태양은 “가벼운 강제추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형법상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혐오,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강간죄에 있어서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한 폭행이나, 흥기를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

---

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성폭력 특별법에서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법 제11조), 위계, 위력의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희롱이 “가벼운 강제추행”과 동일시되면서 “업무상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하기 보다는 성희롱 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내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은 목격자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하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행위가 통상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호의적 감정의 표현이었다고 강변하거나 아예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의 입증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합의로 종결되거나, 가벼운 벌금형 등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성희롱 사건으로 취급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성희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가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법 제7조 제2항)를 규정하는 것이외에는 성희롱의 가해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법 제8조의 2) 있으나, 막상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업주가 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직장내에서 고위간부가 여직원을 성희롱 한 경우 고위간부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사건을 종결지으려는 시도를 할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

---

한다. 또한 성희롱의 금지영역이 직장내의 성희롱에 제한되어 있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계(고객, 거래처)에서 벌어지는 지속적이고 가벼운 성추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매우 적어서 피해자의 침해된 명예감정을 위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길도 없게 된다.

물론 “음란한 눈빛”,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와 평가”, “음란한 농담”, “술따르기 강요” 등과 같은 행위를 모두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화와 함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현실에서 문제되는 성희롱의 행위가 대단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그중 어떠한 행위는 사실상 형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입증에 어려운 가벼운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직장내와 사회생활에서 수치심, 불안감, 불쾌감, 공포감, 혐오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만하다.

## (5) 중강제추행

현재 형법에서는 폭행, 협박에 의한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간음” 다시 말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예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항문이나 구강에 성기 또는 이물질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이처럼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을 강간에 비해 낮게 처벌하는 것은 강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부계 혈통을 이을 수 있는 흠

없는 성”라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성기삽입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한계

### (1) 폭행 · 협박

형법은 폭행 · 협박이라는 개념은 4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법원은 강간죄의 인정에 필요한 폭행 ·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의 폭행으로 해석하여, 저항할 수 없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만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당시 공포심으로 인해 비명을 질렀지만 신체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수치심으로 인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한 사안,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여관에 투숙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간음 당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폭행 ·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원하지 않는 간음”을 당하는 그 자체가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이자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피해자의 경험을 무시한 해석론이다. 여성인 피해자가 남성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때 실력으로 이를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극렬하게 저항할 경우 제3자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명을 지르는 이외에는 달리 저항할 수단을 찾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강간죄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2) 피해자의 저항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만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되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성은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정숙한 여성이

---

라면 강간에 대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수사와 재판에서도 “폭행, 협박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이 있었는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범죄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를 문제삼는 것과 달리, 성폭력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대응방식이 어떠하였는가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유사피의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실무관행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여성은 성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고소의 진의를 의심받는다. 설령 성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자기방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다.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물리적인 저항”을 성폭력범죄의 요건으로 삼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실무관행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3)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강간이라고 외치는 여성은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이라고 외치지 않고 조용히 고소를 한 여성조차도 진짜 피해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얻지 못한다. 강간 고소를 지연한 여성은 불신당한다. 즉각 강간고소를 행한 여성은 그녀의 악의 또는 환상이 의심받는다”는 유명한 말처럼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의심받는다.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허위고소가 많다는 명확한 통계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돈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가 사적인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뚜렷한 물증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는 그 진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같은 질문을 되풀이 답변하여야 하거나, 장시간 수사를 받고 수차례 소환을 받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받거나, 거짓말탐지기의 조사에 응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우리의 수사관행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여성의 진술이 사실인가 여부를 확

---

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소한 기억의 차이에 대하여도 집요한 추궁이 이어진다. 보통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성폭력이라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수사관행은 피해여성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불일치 하는 경우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빙성 없는 증거로 만들어 버리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자극하여 더욱 일관되지 못한-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 (4) 명예훼손과 무고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현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성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져 일반인들이 전형적인 강간-안면이 없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납치하여 폭행, 협박 후 강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범죄유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강제추행, 비동의간음, 데이트강간 사건에 대한 고소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경우에는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 즉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한 때에만 처벌을 면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의 위험성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규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론 위 규정은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성폭력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만에 하나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까지 범죄자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위 규정이 유지되

---

는 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으며, 성폭력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를 고소함으로써 피해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고소 문제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이른 바 “강간신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의 영향 때문에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와는 달리 의심을 받는 경향이 매우 높은데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범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검찰에서는 각종 통계에서 검사가 무고사범을 인지한 사례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고 무고범죄에 대한 인지를 독려하고 있고, 법률실무교육에서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 강간당했다고 꾸며내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정도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몰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고죄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비해 법정형이 높고 구속되는 비율이 높아 명예훼손 역고소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 심각하다.

## (5) 2차 피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고소의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를 추궁받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피해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또다시 사회적인 명예의 실추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등의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2차 피해”라고 한다.

수사와 재판의 담당자들이 피해자에게 반복질문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질문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주눅이 들고 자신감을 잃게된다. 범죄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민감한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때, 수사담당자가 감정이 없거나 흥미 있어 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인격이 심하게 손상당하였다고 느끼며, 이 과정에서 자책감, 자신감결여, 자기파괴, 불안감, 무력감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사회의 강력한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른 바 “강간신화”는 정조를 잃은 피해 여성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도록 하며, 피해여성의 인격이나 명예는 고려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여성이거나, 성관계가 문란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소의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환경도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남성 수사담당자들로 가득 차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수치스러운 성적피해에 대하여 낱낱이 털어놓아야 한다. 피해자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성적인 이력,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궁할 기회를 부여받지만, 피해자의 변호인이 법정에 설 자리는 없다. 피해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검사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결국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심한 불신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법정이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에게도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낯선 곳이다. 따라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은 법정이 주는 위압적인 분위기-법복을 입은 판사와 검사, 딱딱하고 무표정한 얼굴의 관료, 사건과 무관한 방청객들의 시선, 집요하게 신빙성 여부를 탄핵하는 가해자의 변호인-때문에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두는 것만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2차적 피해는 제도적 미비보다는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의 원인은 성폭력특별법의 결함보다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 4. 보완책

---

## 가. 친고죄의 폐지 또는 반의사불벌죄로의 전환

현재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성폭력을 은폐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범죄의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가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고소취소를 받아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고, 고소취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는 심지어 사소한 일로 한 남성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 나쁜 여성으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문제삼지 않기 원하거나, 가해자를 용서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의 위협은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항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반의사불벌죄로 대체되어야 한다.

## 나.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마련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간죄가 가부장제 하에서 남계혈통을 계승하는 수단으로서의 여성의 “성” 즉 “정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바꾸어 남성이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을 당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간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음”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해석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강간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면, 굳이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될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기 삽입 여부를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고이다. 따라서 간음이라는 개념은 “성교”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때 성교는 미국 모범형법전에서 규정

---

하고 있는 정의와 같이 “구강성교, 항문성교를 포함하고,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약간이라도 삽입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새로운 범죄유형의 신설

폭행, 협박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가 이루어진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폭행, 협박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언제나 피해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너무 큰 나머지 물리적인 폭행, 협박 없이도 저항하지 못한 채 성교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성의 동의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간음”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희롱 역시 모든 형태의 성희롱을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가벼운 강제추행”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성희롱”을 폭력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1회 당한 것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정한 유형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여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법에서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또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강간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강제추행죄”를 신설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라. 강간죄의 구성요건 완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 협박”과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을 요건으로 하는 해석은 대부분의 강간죄에 있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폭행

---

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몇단계로 구분한 다음 그 중 강도죄와 강간죄의 폭행을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

강간죄에서는 일단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가하는 폭력”이 존재한다. 여기에 성기삽입을 위한 폭행, 협박이라는 행위가 또 다시 추가되어 결과적으로는 이중의 폭력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성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보다 보다 수치심,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격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이처럼 강간죄와 강도죄의 불법의 정도와 보호법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협박죄(제283조)와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법원도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해악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여야 하고 피해자의 공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경우”에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 협박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저항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필사적인 저항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통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히거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성교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마. 피해자 보호규정

성폭력특별법의 3차 개정시 신설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때에는 그 조사과정을 녹화하여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수사기관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피해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한 규정, 강간·강제추행 등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반복신문이나

대질신문에서의 고통, 보복의 위험성, 공포감,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구조 때문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고소사건을 무혐의처리하는 경우에만 고소인에게 불기소 이유를 통지하고 있는 현재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기소 여부, 기소의 내용, 공판기일에 관한 정보,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에 준하는 좌석을 지정하여, 단순히 방청객이 아닌 당사자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아동이나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할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이외에도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전문가, 의료인 등을 배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특별법의 증거보전 규정은 청구의 주체가 검사인 관계로, 검사가 성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 바. 일반적인 피해자 유형의 기준 정립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일련의 행태들이 남성의 기준과 경험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거나, 탈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지 않거나, 사건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신고를 지연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하여 사과편지, 각서, 약간의 위자료 등을 받고 사건을 종결 지으려 주변의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때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는 피해사실을 비밀로 하면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며, 피해사실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인가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면, 이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유형들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유형“은 이른바 ”강간신화“나 ”매맞는 여성증후군“과 같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범죄자의 피해자와 다르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불리하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용범위 확대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역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여성의 전화 사건에서 보듯이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여성단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판결문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춘 사례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아직 일관된 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드러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성폭력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까지 유포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비해 열등한 처지에 놓여있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단체의 경우는 반성폭력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는 구

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속에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인식시키고 공론화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 또는 지원단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아.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조인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의 실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해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폭행 협박 및 저항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모두가 법률의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에 대한 교육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그 중립성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역사, 사회,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인 이상,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현재의 법률교육은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치, 사회와 법률은 구분된다는 입장에서 법학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가도 철저히 법률 그 자체만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해석하는 행위”가 이미 판단주체의 경험, 가치관, 주관 등을 개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사회와 역사, 문화의 반영인 이상,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남성중심의 시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법논리가 피해여성들에게는 결코 “객관성”이거나 “중립성”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조인들이 기존에 형성된 성폭력에 대한 가치관, 통념 등을 되돌아보고,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객관성과 중립성에 터잡은 것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판.검사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에서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인지적 교육이 실시될 때만이 가능하다. 법조인들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 경험에 기초한 성인지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피해자의 경험을 하지 못한 법률가들의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피해단체 활동가와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지속적인 사례연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 양성평등한 실무지침의 개발

법률가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질문방법, 피해야 할 질문들, 증거 수집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고, 어린이와 장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피하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지 말 것,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때의 주의사항, 안정된 조사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성경험 등 피해자의 성적인 이력에 대한 질문의 금지, 저속한 용어의 사용금지, 합의와 고소취소를 권하지 말 것, 수사기간을 최소화 할 것 등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성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형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나 간음의 정의, 강간죄의 대상, 광범위한 친고죄 규정과 같은 법률 자체의 한계는 그대로 존재한다. 또한 폭행, 협박, 피해자의 저항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적용,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의 문제,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고소문제 등은 아직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들

---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 3. 15.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성폭력 조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점 및 제안을 밝힌바 있는데 위 토론에서는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① 여성 경찰관 수사전담 또는 동석 ②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보호 ③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④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의무화 ⑤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⑥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⑦ 부부강간죄 도입 ⑧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 의무 ⑨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등이 논의되었던 바, 이와같은 논의의 결과를 참고하여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참고자료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참조)

---

## ■ 참고자료

# 전국 성폭력 협의회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견

### 가. 여성경찰관의 수사전담 또는 동석 관련

- ① 여성수사관이 성폭력피해 사건을 모두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수사반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여성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은 피해자 권리중 하나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여성경찰관 입회는 각각 별도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 ④ 특수한 유형의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신뢰관계의 전문상담원이 진술녹화를 진행하고, 해당 녹화본의 증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나.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관련

- ① 방송관련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조항과 일반인에 대한 피해사실 누출금지 조항을 모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사건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기관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치 및 언론매체의 인권침해 시 대응방법을 조언하도록 하는 규정(지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 ③ 보도기관과 정보통신망 업체에서 피해자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진술녹화제 대상 확대 관련

진술녹화 적용대상의 확대와 별도의 조사실 마련, 중계장치를 통한 대질신문 안은 모두 (반복)진술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재 진술녹화 적용상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과 전

담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함께 만들어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 ① 진술녹화의무조항을 모든 피해자에게 확대하고 해당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며, 촬영본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녹화시 일정정도의 요건을 갖추어 추가적 진술없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제22조의6(증거보전의특례) 조항의 경우, 현재 절차의 까다로움과 해당기관의 협조부재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조항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무화 관련

- ① 성폭력특별법중 피해자 권리관련 조항의 대부분은, 위반시 제재조치가 별도로 없는 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항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조항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재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고통의 상당부분이 변론을 위한 반대신문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신문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원차원의 최소기준, 법조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 마.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관련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문상의 ‘항거불능’요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통설과 판례에 있어서의 ‘정도요건-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한다는-’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바.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간음에 준하거나 보다 심각한 강제추행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사성교행위의 객체를 성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인피해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분은 강간,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연동되는 것이므로, 이후 전반적인 형법, 특별법 개정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사. 부부강간죄 도입 관련

이 개정안은 부부관계의 사생활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남편에게 아내 성폭력 면허를 주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강간범죄 구성요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폭행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다수의 부부강간을 비범죄화할 우려가 높으므로, 부부강간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필요하다.

## 아.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의무 관련

- ① 현재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조항은 일부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강간·강제추행 등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당하고 있다. 때문에, 이 조항은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② 해당조항 위반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 ③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인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증인석에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자. 성폭력방지센터 설치관련

국가나 지자체의 피해자 지원과 조사, 교육 등의 관련 역할을 규정한 것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취지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 방식으로 성폭력방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시한 위의 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① 현재의 지원시스템의 미비점 개선은 법률, 의료지원망의 보다 안정적인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몇 개의 거대 센터가 아닌, 각 지역 상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현재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능해진다.
- ② 몇 개의 거점중심의 센터 설치의 지방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짐은 물론(해

바라기아동센터 7개월간 322건, 전국성폭력상담소 연간 15,600건 2004. 여성부통계), 소규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교육 등의 역할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 ③ 현재 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중복된 업무설정을 하고 있는 점과 기존 상담소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축소, 제한하면서 이 역할을 신설하고자 하는 센터의 기능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 ④ 방지센터 설립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선 전국 12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과 활동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방지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된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⑤ 현재 상담소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개선가능한 부분과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마련, 지자체의 예산변용 방지’ 등 국가의 고유 역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등

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장)

## 1. 인권위법 상 성희롱 개념

### 1) 인권위법 內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 등
- ▶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행위 장소가 직장 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
- ▶ 성적 언동 등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 ▶ 고용상의 불이익 : 채용시 불이익,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 2)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됨
  -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함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임

-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 간음행위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피해자는 여자(부녀)에 한함.
  - 위계 또는 위력이 있어야 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임.
- ▶ 강제추행(형법제298조)
  -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는 성적침해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 감정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임
  - 가벼운 육체적 접촉행위(손이나 무릎을 만지는 행위,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 는 포함되지 않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임.
  - 대상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됨.

## 2. 성희롱 관련법규

### 1)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32조①항(근로의 권리), 동조④항(여성근로의 보호), 제36조(양성평등, 모성 보호)

### 2) 국가공무원법 :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8조(징계사유)

### 3) 여성발전기본법('95.12.30제정) 제17조(고용평등) 국가·지자체·사업주의 성희롱예방 및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의 책무

###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99.2.8. 제정. 05.3.23. 폐지) : 제2조 2호 (성희롱) 제7조(성희롱의 금지)

4-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 시행령 :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

4-2.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부고시 2002-1호)

4-3.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부고시제2002-2호) : 제6장 성희롱금지기준

### 5) 형법('95.12.29. 개정) :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03.12.11. 법률제06995호)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 '04.3.22. 법률제7212호]

8) 남녀고용평등법('87.12.4. 제정, '90.1.13. 개정)

제2절(직장내성희롱금지 및 예방)

8-1.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제4조(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8-2.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제2조(직장내 성희롱판단기준 예시) 등

9) 민법 ('58.2.2. 제정) : 제75조(불법행위), 제751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756조(사용자와 감독자의 배상책임)

### 3. 성희롱 관련법 비교

| 구 분  | 남녀고용평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
| 주관부서 | 노동부  | 국가인권위원회   |
| 적용범위 | 1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br>⇒ 고용관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공공기관 포함)<br>⇒ 고용 + 업무관계   |
| 가해자  | 사업주, 상사, 동료, 하급자<br>⇒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 행위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 및 종사자<br>⇒ 거래처 관계자 포함  |
| 피해자  | 남녀근로자(사업주 제외),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파견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공무원, 교원 등), 학생 및 교육생, 교육기관 입학 응시자, 구직자, 고객, 민원인   |
| 조치수단 |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br>관계 당사자에 대한 조정안 권고(고용평등위원회)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을 위한 조치,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권고. 관계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 |
| 권리구제 | 3년 이내  | 1년 이내   |

|     |  |
|-----|--|
| 기간  |  |
| 행 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li> <li>2.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li> <li>3.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li> <li>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br/>- 조건형 성희롱, 환경형 성희롱</li> </ol> |

-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직장내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성질을 가진 언행, 기타 성에 근거한 행동으로서 직장에서의 남녀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미국 EEOC(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판단기준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를 요구하는 것, 성별적 혹은 성적 성격을 가진 여타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서,
  - 1)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용 여부가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
  - 2)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수용 또는 거부가 개인의 고용결정의 기초로 사용되는 경우
  - 3)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방해하였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업무환경(Hostile environment)을 형성할 의도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 4. 성희롱 관련 판례

1)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대법원 1998. 2. 10, 95다39533 손해배상(기))

【원 고, 상고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신○○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 외 1인)

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1995. 7. 25. 선고 94나15358 판결

“남녀관계에서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 2)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2000가합57462 손해배상(기))

- 2000년 여성노조원들이 회사측과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

## 5. 성희롱 판단시 고려사항

- 원하지 않는(unwelcome) 행위 여부
- 성희롱 거부(불응)를 이유로 어떤 피해(불이익)를 입었는지 여부
- 피해자적 관점, 합리적인 여성(reasonable woman)의 관점
- 행위의 반복성, 일회성

## 6. 성희롱 상담시 고려사항

- 성희롱 관련 법률 숙지
  - \* 통념상 성희롱과 법률상 보호받는 성희롱은 다를 수 있음
- 증거 : 녹음, 내용증명 자료, 상담소 상담기록, 일기장 기록
  - 녹음 : 성희롱이 지속되는 초기단계에서 녹음이 중요함. 성희롱 발생 이후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음.
    - 가해자 찾아가서 이야기하며 녹음.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함.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유도.
    - 통신비밀보호법 :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는 것(도청)은 처벌받지만 내 목소리가 들어간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 내용증명 : 우편을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
    - 효 력 : 성희롱으로 인해 향후 법적인 분쟁 발생시 피해자가 가해

자에게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특정한 시점에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내용을 간단,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 반드시 기재
- 보내는 법 : 우편물을 3부 복사하여 우체국에 접수함. 우체국에서 1통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 나머지 1통은 되돌려 줌.
- 기타 증거 : 진단서, 사진(몸에 멍든 사진 등), 찢어진 옷, 분비물 묻은 옷

○ 증인 : 목격자, 참고인(가족, 친구 등 주변인), 유사 피해자(가해자의 전력 조사) 등

○ 제3자 진정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

○ 노동부 진정 : 동일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였는지 여부

○ 인권위 진정 이외의 방법

- 노동부를 통한 구제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발 : 직장내 성희롱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제756조
-

◆ 참고 1

## 국가인권위원회 법 중 성차별·성희롱 관련 조항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 참고 2

###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10.31 노동부령 175호] [별표이]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 가. 육체적 행위

-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나. 언어적 행위

-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포함한다)
-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3)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시각적 행위

-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감봉·승진탈락·전직·정직·휴직·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비고 : 성희롱 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

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호남지역 아동 성폭력 실태

신기숙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소장

## 성폭력 특별법 제정

### ● 전개과정

-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1년 8월, 여성인권관련 12개 단체)
  - ; 변월수 사건(1988년 9월 10일)
  - ; 김부남 사건(1991년 1월)
  - ; 보은, 진관 사건(1992년 1월 7일)
  - ; 서울대 신교수 사건(1993년 8월)
-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과: 1993년 12월
- 성폭력 특별법 시행: 1994년 4월

## 성폭력의 개념

-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
-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언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의 유형

-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유형
  - 아동 성폭력
  - 청소년 성폭력
  - 장애인 성폭력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의한 분류유형
  - 친족 성폭력
  - 데이트 성폭력
- 발생공간에 의한 분류유형
  - 직장 내 성폭력
  -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과 상담(이원숙, 2003)

## 유형 및 연령별 성폭력 피해자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05), 운영보고

| 연도<br>(상당<br>소수) | 계   |        | 피해자 유형 |        |        | 피해자 연령       |                |                 |               |       |
|------------------|-----|--------|--------|--------|--------|--------------|----------------|-----------------|---------------|-------|
|                  |     |        | 강간     | 성추행    | 기타     | 유아<br>(7세미만) | 어린이<br>(7-13세) | 청소년<br>(14-19세) | 성인<br>(20세이상) | 미상    |
| 2002<br>(104)    | 전체  | 48,112 | 15,841 | 10,974 | 21,297 | 1,511        | 4,087          | 11,635          | 30,879        | -     |
|                  |     | 100%   | 32.9   | 22.8   | 44.3   | 3.1          | 8.5            | 24.2            | 64.2          | -     |
|                  | 장애인 | 4,942  | 2,656  | 598    | 1,688  | 49           | 310            | 915             | 3,668         | -     |
|                  |     | 100%   | 53.7   | 12.1   | 34.2   | 1.0          | 6.3            | 18.5            | 74.2          | -     |
| 2003<br>(115)    | 전체  | 51,431 | 16,165 | 12,904 | 22,362 | 2,201        | 4,781          | 10,742          | 32,877        | 830   |
|                  |     | 100%   | 31.4   | 25.1   | 43.5   | 4.3          | 9.3            | 20.9            | 63.9          | 1.6   |
|                  | 장애인 | 4,778  | 2,432  | 972    | 1,374  | 33           | 210            | 949             | 3,582         | 4     |
|                  |     | 100%   | 50.9   | 20.3   | 28.8   | 0.7          | 4.4            | 19.9            | 75.0          | 0     |
| 2004<br>(124)    | 전체  | 23,284 | 9,669  | 9,240  | 4,375  | 1,063        | 2,450          | 6,071           | 11,899        | 1,801 |
|                  |     | 100%   | 41.1   | 40.2   | 18.7   | 4.6          | 10.5           | 26.1            | 51.1          | 7.7   |
|                  | 장애인 | 1,782  | 879    | 436    | 467    | 21           | 155            | 452             | 1,111         | 43    |
|                  |     | 100%   | 49.7   | 25.5   | 24.8   | 0.7          | 6.6            | 21              | 71.6          | -     |

## 성폭력 사건 신고와 고소

### ● 신고율 및 고소율

- 신고율: 전체발생건수의 2.2%, 6.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98)

- 고소율: 전체성폭력 상담건수의 13~15%

(한국성폭력 상담소, 2005)

### ● 왜 낮을까?

- 사회문화적 요인: 남성중심적 사고(순결이데올로기), 피해자 유발론
- 고소 이후 2차적 피해
- 숨 방망이 가해자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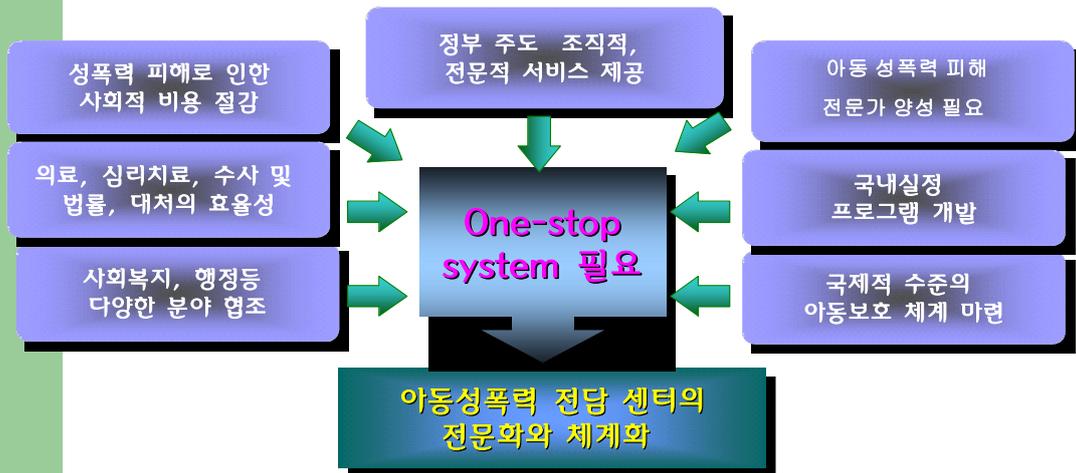
## 개정성폭력특별법('03, 12, 11)

-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물 촬영
-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전문가의 의견조회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증거보존의 특례

## 성폭력 관련 쟁점

- 성폭력의 의미: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 전담수사반
  - 유사강간죄
  - 공소시효
  -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진술녹화 대상 확대 관련
  - 친고죄 폐지
  -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양형기준제도
  - 가해자 구속수사원칙 및 사후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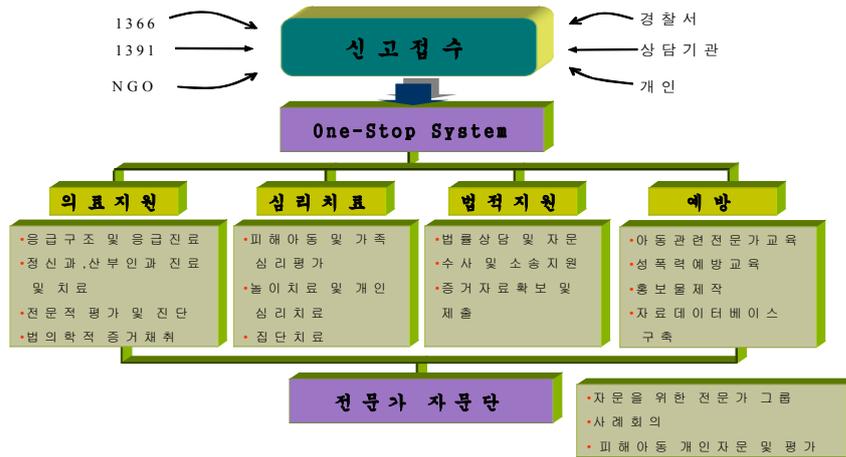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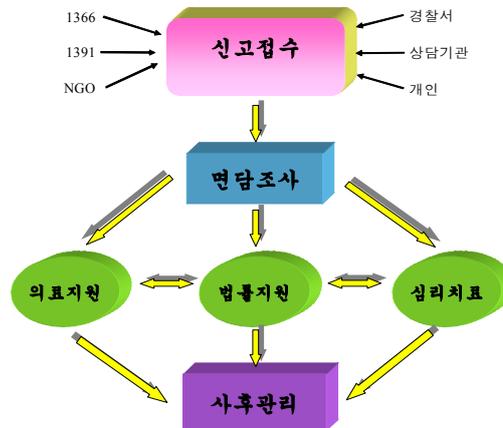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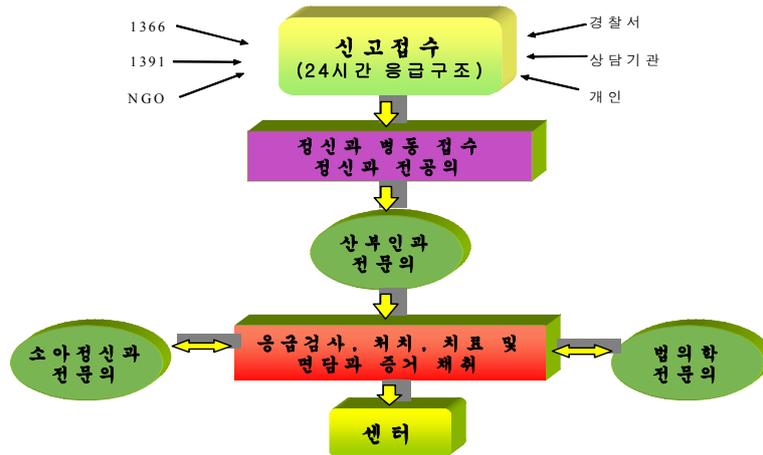
## 호남 해바라기아동센터 업무추진체계



## 업무추진체계(주간)



## 업무추진체계(야간)



## 광주지역 아동성폭력 현황('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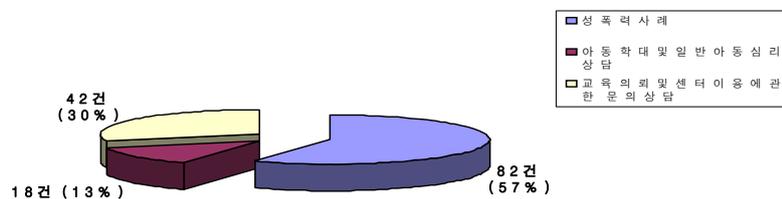
- 광주광역시(8개 성폭력 상담소)  
: 84건(12), 여83, 남1, 전체 1325(423)
- 전남지방경찰청: 119건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7건, 여7
-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6개월)  
: 79건(19), 여77, 남2

-광주지역 아동성폭력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관계로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현황을 설명하고자 함

## 호남 해바라기 아동센터 2005년도 사업현황 및 제언

###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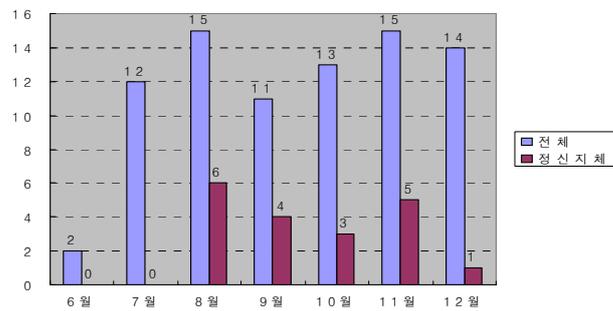
- 2005년 전체 접수 현황 : 총 142건 중 성폭력 사례 82건  
(한달 평균 13.7건)



## 접수현황

- 성폭력 피해사례 월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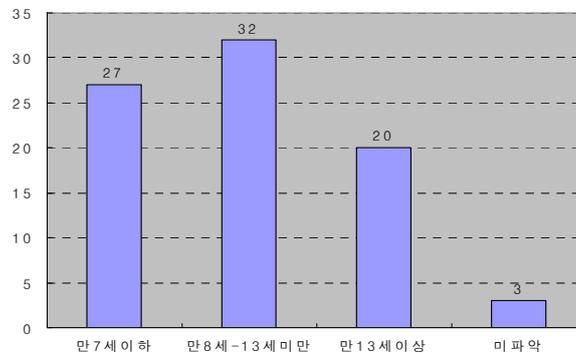
- 전체 82건(정신지체 19)
- 호남지역 정신지체인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므로 대응방안 필요함



## 피해자 특성

-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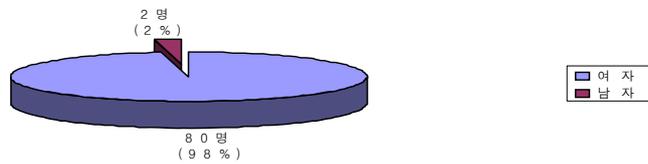
- 최소 연령: 만 2세 / 최고연령 : 만 34세(정신지체)



## 피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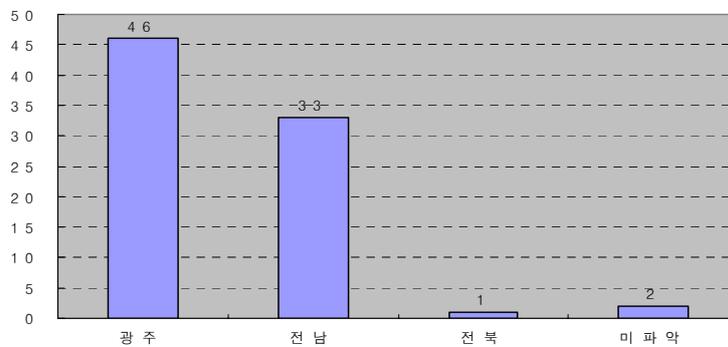
- 성별 현황

- 남아 사례 : 피해여아의 성폭력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다 폭력을 당한 경우, 또래 남아로부터 성기추행과 펠라티오를 당한 경우



## 피해자 특성

- 피해자 거주지역



## 피해자 특성

- 피해유형



##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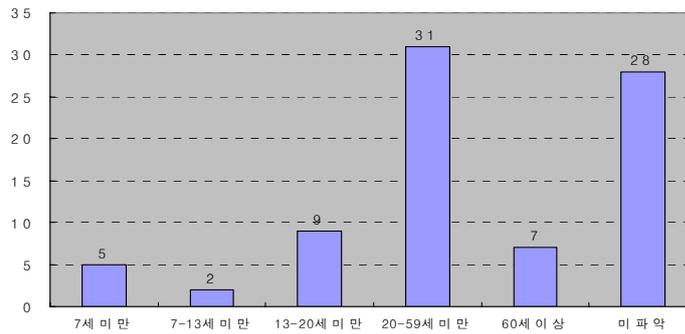
- 피해 횟수 :

- 단 회 27명(33%), 2회 이상 지속 31명(38%)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의 경우 지속적인 피해가 높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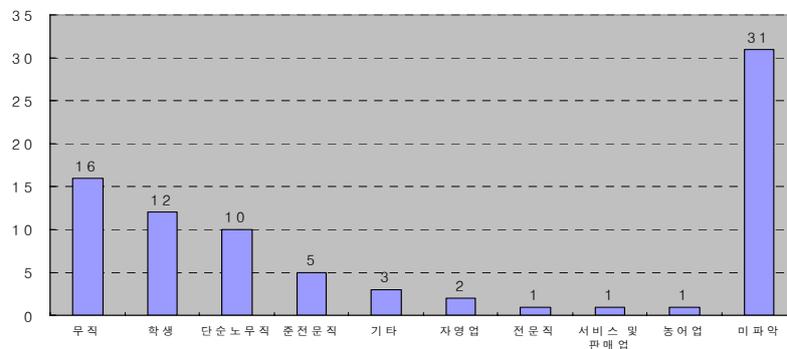
## 가해자 특성

- 성별 현황 : 82명 모두 남자
- 연령별 현황
  - 최소연령 만 4세, 최고 연령 만77세



## 가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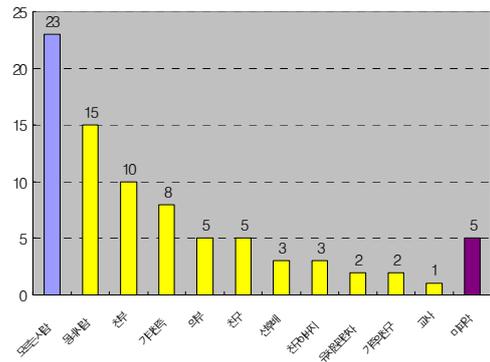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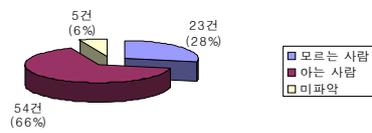
- 가해자 직업
  - 무직과 단순 노무직이 총 28명(32%)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가해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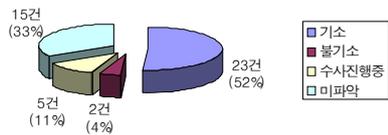
- 피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총 54건(65%) : 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훨씬 많음



## 수사 및 재판

- 고소사건 45건 중 기소처분 23건



- 재판결과 : 집행유예판결이 가장 높음



## II. 서비스 지원현황

### ● 2005년도 전체 서비스 지원현황

- 전체 82명중 센터에 내방하여 서비스 지원 받은 사례 49건
- 총 서비스 건수 : 1,202건 (내방아동 한 명당 평균 25건)
- 팀별 지원 현황 : 의료지원 (348건), 상담 및 법률지원(579건), 심리치료(275건)
- 평균 내방 소요시간 : 초기접수 후 평균 3.3일

(31% 당일 내방, 71% 3일 이내 내방)

## 전체 서비스 지원현황

### ● 지원팀별 서비스 지원현황

| 정신과진료<br>(부모지원) | 의료지원   |      |        |      |      | 상담 및 법률지원 |      |        |                 |                |          | 심리치료     |          |          | 계     |
|-----------------|--------|------|--------|------|------|-----------|------|--------|-----------------|----------------|----------|----------|----------|----------|-------|
|                 | 산부인과진료 | 응급진료 | 기타통합진료 | 약물치료 | 입원치료 | 초기면담조사    | 지원상담 | 개별부모교육 | 법률상담<br>및<br>자문 | 수사<br>및<br>송지원 | 자원<br>연계 | 심리<br>평가 | 심리<br>치료 | 집단<br>치료 |       |
| 151<br>(13)     | 65     | 5    | 11     | 113  | 3    | 49        | 62   | 43     | 452             | 437            | 136      | 32       | 213      | 30       | 1,202 |

## 사업 지원팀별 현황 : 의료지원

- 의료 지원팀 사업 결과 : 초진 및 재진 포함 각 과별 월간현황

|           | 센터정신과 |    | 정신과외래<br>(전남대병원) |    | 산부인과<br>외래<br>(전남대병원) | 응급<br>진료 | 약물치료 |      | 입원<br>치료 | 기타<br>통합<br>진료 | 계<br>(건수) |
|-----------|-------|----|------------------|----|-----------------------|----------|------|------|----------|----------------|-----------|
|           | 아동    | 부모 | 아동               | 부모 |                       |          | 정신과  | 산부인과 |          |                |           |
| 7월        | 16    | 0  | 7                | 0  | 8                     | 2        | 9    | 9    | 0        | 0              | 51        |
| 8월        | 19    | 0  | 12               | 0  | 13                    | 0        | 12   | 6    | 0        | 0              | 62        |
| 9월        | 7     | 2  | 16               | 1  | 16                    | 1        | 13   | 11   | 2        | 3              | 72        |
| 10월       | 6     | 2  | 17               | 4  | 8                     | 1        | 16   | 5    | 0        | 1              | 60        |
| 11월       | 12    | 2  | 15               | 1  | 13                    | 1        | 12   | 5    | 0        | 5              | 66        |
| 12월       | 3     | 0  | 8                | 1  | 7                     | 0        | 8    | 7    | 1        | 2              | 37        |
| 계<br>(건수) | 63    | 6  | 75               | 7  | 65                    | 5        | 70   | 43   | 3        | 11             | 3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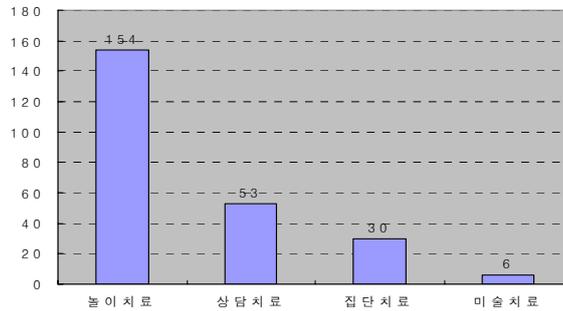
## 사업 지원팀별 현황 : 상담 및 법률지원

- 상담 및 법률지원팀 사업 결과 : 월간현황

| 월별업무<br>현황 | 초기면담<br>조사 | 피해자<br>지원상담 | 개별 부모<br>교육 | 법률 상담<br>및 자문 | 수사 및 소<br>송지원 | 자원연계 | 계   |
|------------|------------|-------------|-------------|---------------|---------------|------|-----|
| 7월         | 9          | 0           | 10          | 5             | 7             | 7    | 38  |
| 8월         | 15         | 6           | 15          | 25            | 29            | 2    | 92  |
| 9월         | 7          | 5           | 7           | 28            | 17            | 6    | 70  |
| 10월        | 5          | 3           | 5           | 29            | 28            | 18   | 88  |
| 11월        | 10         | 7           | 4           | 37            | 38            | 53   | 149 |
| 12월        | 3          | 41          | 2           | 28            | 18            | 50   | 142 |
| 계          | 49         | 62          | 43          | 152           | 137           | 136  | 579 |

## 사업 지원팀별 현황 :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 지원팀 사업결과
  - 심리 평가 : 49명중 32명 실시  
(PTSD 28명, 급성스트레스장애 2명, 진단유보 2명)
  - 심리치료 : 총 31명을 대상으로 총 243건 제공  
(12월말 21명 진행 중)



## 제언

- 아동 성폭력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및 평가도구 개발
- 아동 및 정신지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 검증
- 관련기관 종사자들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 아동 보호시설을 경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아동성폭력 특별법 개정 촉구
- 아동성폭력 전담수사팀 제도의 확립
- 의료비 지원 체계의 안정화
-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의 전국확대

#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방안

정미혜(광주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장)

## 1. 상담통계

| 구분         | 성관련 |     |     | 가정관련 |    | 학교관련 |     | 진로(학업) | 대인관계(이성) | 가출  | 근로권   | 자살 | 정신건강(성격) | 유해환경(유해매체) | 단순정보 | 기타 | 누계  |        |
|------------|-----|-----|-----|------|----|------|-----|--------|----------|-----|-------|----|----------|------------|------|----|-----|--------|
|            | 성매매 | 성폭력 | 일반성 | 폭력   | 갈등 | 폭력   | 갈등  |        |          |     |       |    |          |            |      |    |     |        |
| 1388 전화 상담 | 낮   | 47  | 1   | 6    | 7  | 24   | 15  | 40     | 13       | 29  | 199   | 1  | 1        | 14         | 14   | 17 | 142 | 570    |
|            | 밤   | 3   | 5   | 2    | 1  | 15   | 3   | 1      | 2        | 1   | 69    |    |          | 4          | 8    | 3  | 21  | 138    |
| 내방상담       |     | 64  | 12  | 4    | 11 | 41   | 11  | 45     | 45       | 28  | 551   |    |          | 15         | 45   | 2  | 123 | 997    |
| 집단상담       |     | 4   |     |      |    |      | 65  |        | 2,322    | 9   | 196   |    |          | 3,040      |      |    | 466 | 6,102  |
| 현장상담       |     | 13  | 3   | 1    | 8  | 9    | 42  | 4      | 82       | 150 | 73    |    |          | 8          | 8    |    | 17  | 418    |
| 거리상담       |     |     |     | 47   |    |      |     |        | 242      | 556 |       |    |          | 1,373      |      |    |     | 2,647  |
| 홈페이지       |     |     |     |      |    |      | 1   |        | 9        | 3   | 3     |    |          |            |      |    |     | 16     |
| 심리검사       |     | 4   |     |      |    | 4    |     | 2      | 10       | 67  | 17    |    |          | 73         | 1    |    | 56  | 234    |
| 기타         |     | 1   |     |      |    |      | 3   | 2      |          |     | 25    |    |          | 3          |      |    |     | 34     |
| 누계         |     | 136 | 21  | 489  | 27 | 93   | 140 | 94     | 2,725    | 843 | 1,133 | 1  | 1        | 4,530      | 76   | 22 | 825 | 11,156 |

## 2. 사례

### ① 유00(87, 여) 교회에서 전도사에게 성폭행

고3인 내담자는 교회전도사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사가 금품등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도사는 유부남 이었으며, 교회에서 고등학생, 이혼녀등 여러 신도와 성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6개월여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미성년자 성보호에 관하여 설명하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하도록 하여 부모님이 경찰에 고소하였다.

내담자는 전도사와의 관계정리, 부모님의 충격, 교회에서의 역할로 힘들어하여 상담사례관리를 하였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였다.

### ② 차00(87, 여) 노래방에서 성폭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단에 취직이 확정되어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던 차에 친구와 만나기로 한 노래방에 갔다. 집에는 친구집에서 자고 가기로 되어있었다. 노래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몸을 더듬었다. 너무 놀라서 도망 나왔고, 늦은 시간이어서 집에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센터에 긴급구조요청을 하였다.

센터에 와서 상황을 진술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잠을 자도록 하였다. 다음날 어제는 많이 놀랐으나 이제는 괜찮다고 하면서 늦은 밤에 혼자 있으니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집에 연락하여 어머니와 확인하니 내담자의 진술내용이 확인되었고 귀가 조치하여 출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이00(90, 여)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남자친구 2명과 여자친구 1명과 상무지구 0모텔에 투숙하였다. 소주와 맥주를 사서 먹고, 서로 짝이 되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거부하니 게임을 하여 이긴자의 주장대로 하자고 하였다. 내가 져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친구가 성폭행으로 신고하라고 하여 센터에 와서 입소하게 되었다.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니 잘 모르겠다고 하며, 컴퓨터에 입소해 있는 동안에 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서는 소극적이며 표현능력이 부족하였다. 성관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피임은 안한다고 하였다. 다른 입소청소년과 함께 새벽에 아무런 말

---

도 없이 퇴소하였다.

④ 하00(70, 여) 성폭력상담소에 안내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내담자의 나이가 센터의 대상이 아니어서 성폭력상담에 안내하였다.

⑤ 문00(96, 여) 해바라기상담소에 안내

아파트 근방에서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 여자친구와 놀고 있는 아이를 어떤 아저씨가 와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노는 아이의 뒤에 앉아서 성폭행을 하였다. 경찰에 신고하였고, 애들은 범인을 보고 아니라고 하였는데, 정액의 유전자가 일치하였다. 범인은 나주 정신병원에 있다고 하고 8순 노모와 함께 산다고 하였다. 범인 쪽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였다. 성폭행의 법적 문제를 상담하고, 아이의 피해극복을 위하여 해바라기상담소에 가도록 안내하였다.

⑥ 김00(91, 여) 여러 의료서비스와 체불임금 및 손해배상

내담자는 부모는 사망하고 그동안 언니의 도움으로 지내다가 가출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한 0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며 친구 고00와 지냈으나 경찰의 단속으로 센터에서 긴급 구조하여 입소하게 되었다.

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잦은 티켓영업으로 산부인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성 자궁 경부염, 좌측 난소 종양, 만성 질염, 인유두종 바이러스(High Risk : 16)등의 산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료소견과 정밀검진 결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미성년자라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부분과 동의서를 받아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저혈압 및 척추 측만증 등으로 내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와 수술을 거부하여 상담과 종합병원의 검사를 통한 실무자들의 노력으로 설득하였다.

내담자는 수술을 하게 되면 서울에서 하고 싶다고 했고, 언니 보고 싶다 하여 형부 연락처를 통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언니는 내담자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며 '2년 동안 연락 하지 않고 지냈고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으며, 전에는 신경써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동생에 관련된 일이

---

면 본인이 거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수술과 자궁경부암 가능성 및 여러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면서 서울에서 수술 받고 싶고, 언니 곁에서 수술 받고 싶어함을 알렸으나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동생과 관련된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큰 이모, 이모, 외할머니, 할머니, 작은엄마, 형부, 언니 등 연락이 가능한 모든 가족과 연락을 했으나 아무도 내담자를 책임지지 않으려 하였고 계속 언니와의 통화를 통해 수술 동의서를 받기로 하였다.

센터에 입소해 있으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진료속에 질염 등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마쳤으며, 난소 종양만 제거하는 수술만 남아있다.

지난 광산구에 소재한 0다방에서 일하는 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병원치료비에 대해 여러차례 면담과 협의속에 업소 사장 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병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았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학교 진학도 준비하고 있다.

#### ⑦ 최00(89, 여) 가출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과거를 잊고..

광산구 우산지구대를 통하여 연계된 내담자는 어려서부터 부모 갈등으로 불안한 가정생활을 해오다 초등학교 4학년때 부모이혼, 부는 중3때 재혼하여 전북에 거주하고 모는 중1때 전남으로 재혼함. 그동안 계모와 생활하다 계모와의 갈등으로 고1때부터 화순으로 재가한 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모가 음주 오토바이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부의 집에서 살 수 없었던 내담자는 가출을 하게 되었다.

가출 후 하남 줄까다방, 농성동 걸다방, 대구 허벅다방에서 매일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종사하였으나 업주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월급을 주지 않았으며 다방에서 성매매시 변태성행위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산부인과 치료가 필요하였다.

센터에 입소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염증세포(WBC 20-30/HPF, RBC 0-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산부인과 정밀진단 및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급성 방광 요도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접촉성 피부염, 골반염 등이 발견되었다.

산부인과 치료가 계속되는 도중에 소변도중 출혈덩어리가 보이고 아랫배의 통증을 호소하여 산부인과에 응급입원과 3일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아랫배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전남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내담자는 교도소에 있는 모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면회가 되지 않아 전북 남원시 사매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증발급신청을 의뢰하여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내담자 모와 면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갈등과 모의 교도소 수감으로 거처가 불확실하며, 내담자의 검정고시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여수 사랑의 집에 기관 연계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서비스와 지속적인 사례관리중이다.

### ⑧ 김00(88, 여) 인터넷 채팅에서의 다방 경험

내담자는 운암동 소재 000다방에서 일하다가 운암지구대로 인계되어서 센터로 오게 되었다. 다섯 살 때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아버지 집을 오가면서 성장 하였다. 처음에 내담자와 마주 쳤을 때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문신과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다방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었는데 돈이 필요한차에 직장 구해준다고 하기에 서울에서 내려 왔다고 한다. 다방에서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내담자와 상담하는 동안에도 라포형성이 되지 않아 상담진행이 힘들었다.

다방에서 다시 일하지 않은 조건으로 숙소로 돌려보내고, 주1회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받지 못한 급여 35만원을 받게 해주고, 심한 피부질환 치료와 문신제거 1차 시술을 해주었다.

상담결과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 센터에서 아버지와 연락 후 서울로 귀가지원을 해주었다.

문신제거는 시일이 많이 걸려서 서울센터에 의뢰하여 문신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며, 현재 집에서 학교에 잘 다니고 적응하고 있다.

주1회 전화상담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이다.

### ⑨ 김00(88, 여) 재활교육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신고로 7월 25일 금남지구대에서 첫 번째 인계되었다.

당시에 내담자의 집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성군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하여 내담자를 인계하였으나 귀가 후 4일 만에 역전지구대에서 2번째 인계

를 하게 되었다.

내담자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정에 직접 데려다 주고, 부모님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가 정신지체 3급이고 학교를 다니지만 잦은 가출로 인하여 부모님들도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담임선생님과의 상담결과 내담자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가정에서의 잦은 가출이 학교의 결석으로 이어지고, 학습능력도 매우 떨어진 상황으로 학교에서는 내담자의 학교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과 부모님의 동의로 정읍에 있는 자애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

자애원에서 내담자가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했으나 답답해하고 내부에서 싸움을 하는 등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애원에서 퇴소를 원하였다.

내담자가 정신지체이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고, 대화상대자를 찾는 모습으로 보아 중증장애인 시설 보다는 기숙형 특수학교나 단기보호센터가 상황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학교를 알아보았으나 내담자와 맞는 학교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담양에 있는 덕산단기보호센터에 입소를 의뢰하게 되었다.

덕산단기보호센터에 입소하여 그 곳의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소지를 옮겨서 내담자 개인으로 수급권 혜택을 받아서 직업재활까지 이르고자 했으나, 내담자가 다시 부적응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상담 및 병원 진료(산부인과와 피부과)를 통하여 내담자 생활 의지와 직업에 대한 욕구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현재는 직업재활센터에 입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으며, 이 후에는 직업교육으로 자립생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⑩ 류00(88, 여)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발견

내담자는 17세의 초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가출, 도덕적 개념부족, 특히 성적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의 가출과 함께 시작된 방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주로 다방에서 다류 배달과 성매매 일을 해오다 지난 8월 임신 8주로 센터에 도움 요청을 해왔다.

내담자는 여러 다른 쉼터를 입소한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시 입소를 요

청했을 때 무분별한 성적 행동으로 강력히 입소 거절을 당한 상태였다.

내담자의 부와 상담 후 낙태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성매매와 성적문제 행동들이 계속되어 문제행동들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위해 나주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내담자의 지능검사 결과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IQ 71로 기본 지식, 사고기능, 변별력능력 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성숙도 검사는 SQ 62로 사회연령 10세 정도의 지적 및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생리적 욕구 조절이 나약해 보였다.

나주병원 입원 도중 더 나은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고자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과정의 “성 매수 피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창원시 소재, 범숙학교)에 참가중이다.

내담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자아발견의 의욕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직업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 ⑪ 강00(89, 여) 다방에서 구조되어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내담자는 함께 가출한 이00와 다방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었으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두 명의 여자 청소년이 광산구에 위치한 00다방에서 일하고 있다고 시민이 제보해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도움을 받아 다방에서 긴급구조하여 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내담자는 부모와의 마찰과 방황으로 잦은 가출을 했었고 아는 오빠 소개로 광주 지역 다방에서 일하게 됐다. 광주까지 오는 택시비의 절반은 다방에서 지불했고 광주에 도착해서 7월 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일하면서 하루 평균 30여번의 배달을 나갔고 구조당시 내담자와 이00는 50만원정도의 빚이 있었다. 일하면서도 서너번 정도 성매매를 권유 받았다고 했다. 먼저 긴급구조된 두명의 체불임금과 채권·채무 정리가 필요해서 다음날 채권·채무 정리를 위해 00다방에 방문해서 내담자와 이00의 임금 28만원을 입금받았고 채권·채무 포기각서를 받아왔다. 또 내담자의 학생증과 휴대폰을 챙겨오는 사이 내담자와 친구는 무단으로 자진퇴소를 했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됐다.

내담자가 일하던 다방사장 양00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소재를 파악했고, 그 결과 8월 22일 내담자를 긴급구조 해왔던 다방사장 양00에게서 첨단지구에서 내담자가 다방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전화를 받았

다. 그 후로도 양00과의 연락을 통해 다방을 옮기는 것을 주시하며 지켜보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다방 일하고 있는 내담자를 발견했다. 단속하려고 지켜보고 있거나 찾아 다니는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안심시켰고 센터에서 전에 일하던 다방에서 입금한 임금과 퇴소당시 놓고 간 짐들을 챙겨주려고 한다. 언제든 편할 때 찾아와서 놓고 간 짐과 돈을 찾아 갈 것을 권했다. 10월 27일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고 싶다고 센터에 방문했고 입소당시 두고 갔던 짐과 다방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을 수령해서 10월 28일 내담자는 집으로 귀가 했다.

귀가 후 학교로 복귀하는 대신 제빵제과기능사 시험을 준비해 12월 8일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실기시험을 준비중이다. 또 다가오는 3월부터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부할 계획이다. 지난 일들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 3. 개선방안

- ① 관련법률제정 및 시설과 프로그램등의 제도정비가 구체적 사안에 맞도록 다양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 ② 성폭력예방과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③ 문화국가에 합당한 성의식정착을 위한 사회운동이 절실하다.

# 여성장애인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I. 여는 말

여성장애인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을 말한다 (김정애, 2000, p.11).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억압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형성의 차단과 가족 관계에서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에 이르는 이중적 요소로 인해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되며,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그들의 피해가 은닉되거나 축소되어지는 경우가 많다.(오명란, 2005,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상담만족에 관한연구)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여성 긴급전화 「1366」의 기능강화,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가정폭력의 예방, 성폭력예방 홍보사업의 강화, 행위자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시책과 사전예방 정책’의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백서2003, p.254).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활발하게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한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사회서비스연계 활동을 벌이고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셋터”가 문을 열고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02년도 개소 이후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했던 상담통계를 기초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지원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정책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현황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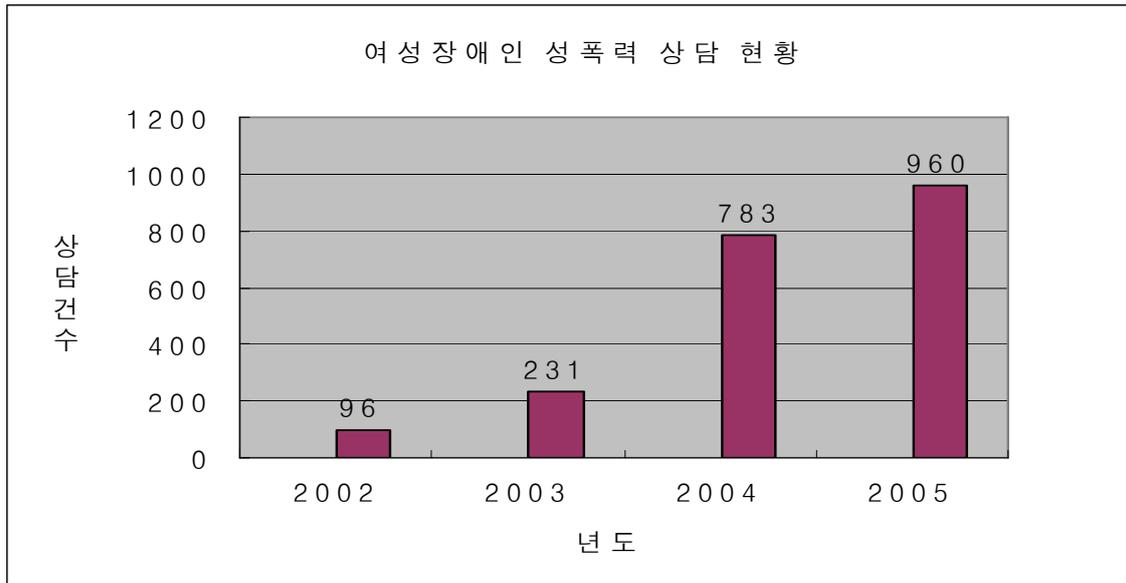
광주지역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와 같다. 아래의 표는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2002년도 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도 12월 말일까지의 4년간 전체 상담 통계 자료이다.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도 96건, 2003년도 231건, 2004년도 783건이고 2005년도에는 960건으로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II- 1> 전체 상담 건수

(단위 : 건 / %)

| 구 분  | 전체 상담 건수 |       |       |       |                          |     |
|------|----------|-------|-------|-------|--------------------------|-----|
|      | 계        |       | 성폭력상담 |       | 기타상담<br>(가정폭력, 성상담, 성매매) |     |
|      | 전체       | 장애인   | 전체    | 장애인   | 전체                       | 장애인 |
| 2002 | -        | 96    | -     | 96    | -                        | -   |
| 2003 | 297      | 231   | 297   | 231   | -                        | -   |
| 2004 | 1,117    | 1,004 | 809   | 783   | 308                      | 221 |
| 2005 | 1,206    | 1,086 | 996   | 960   | 210                      | 126 |
| 합 계  | 2,620    | 2,417 | 2,102 | 2,070 | 518                      | 347 |



##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분석

2005년도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분석하면 아래 <II-2> 와 같다.

정신지체 장애인(34명 : 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체장애인 (8명 : 15.7%)이며 청각-언어 장애인도 (6명 : 11.8%)로 나타났다. 연령적 분포를 보면 20대(23명 : 45%), 10대(10명 : 19.6%), 41대이상(9명 : 17.7%)의 순으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많다. 장애인 성폭력의 유형은 거의 모두가 강간(43명 : 84.3%)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면에서는 같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성폭력을 행한 경우가 (20명 : 39.2%)이며 다른 가해자가 여러 번인 경우가 (17명 : 33.3%)로 지속적인 성폭력이 72.5%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나타났다.

표<2-2> 여성장애인의 성폭력피해 현황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 |           |           |           |           |          |          |
|---------------------|-----------|-----------|-----------|-----------|----------|----------|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기타       | 계        |
| 8(15.7%)            | -         | -         | 6(11.8%)  | 34(66.6%) | 3(5.8%)  | 51(100%) |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분포 |           |           |           |           |          |          |
| 10세                 | 11-20세    | 21-30세    | 31-40세    | 41세 이상    | 계        |          |
| 4(7.8%)             | 10(19.6%) | 23(45.1%) | 5(9.8%)   | 9(17.7%)  | 51(100%) |          |
|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 · 유형    |           |           |           |           |          |          |
| 강간                  |           | 성추행       |           | 성희롱       |          | 계        |
| 43(84.3%)           |           | 8(15.7%)  |           | -         |          | 51(100%) |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지속성   |           |           |           |           |          |          |
| 1회                  | 2회-3회     | 미파악       | 같은 상대 여러번 | 다른 상대 여러번 | 계        |          |
| 8(15.7%)            | 5(9.8%)   | 1(2.0%)   | 20(39.2%) | 17(33.3%) | 51(100%) |          |

자료출처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5

### Ⅲ. 결론 및 제언

상담통계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예방차원의 교육 및 사회전반의 인식교육 또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면 지속적인 사회적 차별과 억압속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련된 대안을 해결해야 한다.

#### 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전문상담원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상 의료지원,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의 인원으로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원의 인원 보충이 요구된다.

- ②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여성장애인관련기관 및 시설종사자 및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수준별, 체계적,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비친고죄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친고죄가 적용하는 현안들을 접하면서 모든 장애인, 시설 입소자에게는 비친고죄가 확대적용되어 성폭력이 은폐되지 않아야 한다.
- ⑤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문제의 올바른 해석이 요구된다.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 ⑥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중, 장기로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3개월의 기간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상담사례 >

## 발기부전 남성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은 가능한가?

오명란(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 1. 인지경로

정신지체1급 장애인 언니를 데리고 살아 주어서 늘 고마움에 일상생활용품에서 부터 의복까지 지원하는 피해자 여동생은 그날도 김장 김치를 전해 주기 위해 갔더니 언니가 하는 말 “나 보고 바람피웠다고 나가라고 한다”며



가해자는 13년 전 배를 타고 일을 하던 중 사고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 그 이후 성기능 장애로 아내와 부부관계가 어렵다고 가해자 부인이 증언하였다.

마을에서 이장직을 수행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주변의 인지도가 있는 상황으로 아무도 성폭력 가해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성폭력을 하기 위하여 빈집으로 들어갈 때 받을 매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목격하였지만 증인으로 나서주지 않았다.

#### 4. 피해상황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의 눈을 피하여 지속적인 성폭력을 하였고, 몇 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켜서 혼 줄이 난적도 있지만 마을에서 살려면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어머니의 피맺힌 절규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댁의 대소사에 참가하여 집을 비운 날은 어김없이 성폭력은 일어났고 피해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성폭력은 일어났고, 돼지를 키우는 우리 부근의 창고에서 성폭력은 일어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증인이 되어주지 않았다.

아내의 성폭력 소문이 나돌자 남편은 알콜 의존이 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상담소에 나와서 각서를 쓰고 반성을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돌림과 수군거림에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신다고 하소연 하였다.

#### 5. 지원과정

| 상 담 조 치 사 항 |           |          |          |          |          |              |      |      |     |      |      |
|-------------|-----------|----------|----------|----------|----------|--------------|------|------|-----|------|------|
| 계           | 정서적<br>지지 | 법률<br>상담 | 수사<br>동행 | 소송<br>지원 | 의료<br>지원 | 복권기금 치료 프로그램 |      |      |     |      |      |
|             |           |          |          |          |          | 가족치료         | 미술치료 | 인지재활 | 정신과 | 사회적응 | 원예치료 |
| 86          | 31        | 3        | 5        | 16       | 4        | 2            | 10   | 3    | 2   | 2    | 8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은 단 회적으로 끝날 수가 없다. 본 상담 조치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86회에 걸친 지속 상담이 계속되었다.

형사고소고발하여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 되었고 물론 민

사소송을 진행하여 심리적보상금으로 일천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지만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된 이후 남편의 알콜 중독으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지만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와 아이들은 친정 동생 집으로 피신하는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소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후 관리는 복권기금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 6. 지원과정에서의 문제점

본 사건을 지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이었다.

대질심문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는 실신을 하여 응급실에 실려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건조사에 임하였지만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고,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성기능 장애를 주장하였다.

구속영장을 청구 하던 날 가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통하여 발기부전 성기능장애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였고 담당형사는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의 진술보다 대학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구속영장은 뜬구름이 되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진술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외딴 섬마을 두 시간 삼십분 버스를 타고 배를 타야 갈수 있는 피해자의 마을에 가정방문 상담을 가게 되었고 성폭력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피해자의 꿈인형 이야기가 단서가 되었고, 부패되어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인형은 국과수에 의뢰되었고 유전자가 검식이 되어 가해자는 다행스럽게 구속되었다.

## 7. 성폭력 피해 이후의 현황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상담소의 지원만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다. 가족지원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도 심각하지만 남편의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한 현실이다. 정신지체장애인 아내와 살기도 힘든 상황에 다른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내와 살아야 하는 남편은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가해자로 전락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는 또 다른 가해자로 탈바꿈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마을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살고 있고, 피해자 가족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하는 상황이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는 엄중 처벌하여 “여성”과 “장애”의 이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당사자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

---

##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쉼터 주소록

(2006년 3월 현재)

| 상담소명                          | 소장명        | 전화번호, fax                                  | 주 소  |
|-------------------------------|------------|--|--|
| 서울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신희원        | 02)3675-4465,4466<br>3675-4467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46<br>기독교회관 808호 (110-736) |
| 부산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장명숙        | 051)583-7735,6<br>051)583-1996             | 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204-4<br>(609-837)            |
| 대구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권순기        | 053)637-6057<br>053)637-6063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23-3<br>(704-310)              |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br>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한은경        | 063)242-8275<br>063)246-2003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br>1555-4 (561-832)        |
| 청주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하숙자        | 043)224-9414.5<br>043)224-3806             |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3<br>(360-050)               |
| <b>광주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b>     | <b>오명란</b> | <b>062) 654 - 1366<br/>062) 676 - 2311</b> | <b>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49-2<br/>(503-030)</b>      |
| 마산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김순옥        | 055)241-5041<br>055)241-5043               | 마산시오동동 17-135 가교파<br>오피스텔509호 (631-859)    |
| 목포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서미화        | 061)283-3767<br>061)283-4767               | 전남 목포시 옥암동 995-2<br>승훈빌딩4층                 |
| 장애여성공감<br>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배복주        | 02)3013-1399<br>02) 441-2328               | 강동구 명일1동47-1 세종프라<br>자 606호 (134-825)      |
| 경원사회복지회 여성<br>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한영애        | 031)755-2526,7<br>031)758-4724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9<br>송남BD 501호 (461-825) |
| 장애인성폭력<br>아산상담소               | 전희재        | 041)541-1514,5<br>041)546-1514             |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99-59번<br>지 (336-012)         |
| 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김현정        | 02)8684-222                                | 서울시 구로구 구로6동                               |
| 제주여성장애인<br>성폭력상담소             | 김경미        | 064)753-4980                               | 제주시 삼도2동 294-1<br>(농학로 23번지)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br>(가까운 상담소 연락)    | 서울(2)      | 서울여성장애인 쉼터                                 |  |
|                               |            | 헬렌의 집                                      |  |
|                               | 부산(1)      | 부산여성장애인 쉼터                                 |  |
|                               | 광주(1)      | 광주여성장애인 쉼터 “셋터”                            |  |

메모